

투자신탁 신탁약관 변경

1. 투자신탁의 명칭: 신한 인컴 알파 장기 사모채권투자신탁 제(8)호

2. 신탁약관 변경 시행일 : 2008. 2. 26

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:

● **변경사유**

- 수익자의 요청으로 투자신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함.
 - 채권 투자신탁에서 채권혼합 투자신탁으로 변경.
이에 따른 투자신탁명 및 관련 조항(목적, 영업일, 환매금액 지급일 등)을 변경함.
- 수익자의 요청으로 투자신탁회계기간을 변경하고자 함.
 - 이와 관련하여 보수계산 및 인출기간을 변경함.
- 기타 법규 변경 사항을 반영함.

변경사항	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투자신탁명	신한 인컴 알파 장기 사모채권투자신탁 제(8)호	신한 BNPP 국내 사모 채권혼합 투자신탁 제1호
제1조(목적등)	① <생략> ② 이 투자신탁은 <u>채권에</u>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<u>채권에</u>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, <u>채권</u> 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 ③ <생략>	① <생략> ② 이 투자신탁은 <u>신탁재산의 60% 이상</u> 을 채권에 투자하고 40%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<u>채권혼합형</u>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<u>채권 및 주식</u> 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, <u>채권 및 주식</u> 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 ③ <생략>
제2조의2 (투자신탁의 가입제한등)	① <생략> 1. 수익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일 것 2. <생략> ②~③ <생략>	① <생략> 1. 수익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제8 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일 것 2. <생략> ②~③ <생략>
제3조(정의)	<생략>	<생략>
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생략> 2. “영업일”이라 함은 <u>판매회사의 영업일</u>을 말한다. 3. <생략>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생략> 2. “영업일”이라 함은 <u>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</u>을 말한다. 3. <생략>
제12조 (투자신탁회계기간)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② <u>그러나, 부칙2(변경) 시행일 이전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인 2007년 8월 30일 이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부칙2(변경) 시행일의 전영업일인 2008년 2월 25일까지</u>이며 그 이후에는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
제22조 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생략>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3영업일</u>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~ ④ <생략>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생략>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4영업일</u>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~ ④ <생략>
제25조 (수익증권의 환매제한)	<p><생략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전일</u>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<생략> 	<p><생략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전전영업일</u>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<생략>
제36조	① <생략>	① <생략>

<p>(투자대상등)</p>	<p>3.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4. ~ 3. <생략></p> <p>4.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CD금리선물, 통안증권금리선물,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(이하 “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”이라 한다)</p> <p>5. ~ 9. <생략></p> <p>②~③ <생략></p>	<p>1. <u>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,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(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)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</u></p> <p>2.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3. ~ 4. <생략></p> <p>5. <u>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, 주가지수옵션, 주식옵션, 코스닥지수선물, 코스닥지수옵션, CD금리선물, 통안증권금리선물,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(이하 “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”이라 한다)</u></p> <p>6. ~ 10. <생략></p> <p>②~③ <생략></p>
<p>제37조 (투자한도)</p>	<p>① <생략></p>	<p>① <생략></p> <p>1. <u>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 단,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에의 투자</u></p>
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</u> 2. ~ 6 7. <u>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</u>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% 이하가 되도록 한다. 8. <생략> <p>② <u>제1항제1호 내지 제4호</u>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<생략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<u>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	<p><u>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<u>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</u> 3. ~ 7 8. <u>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u>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% 이하가 되도록 한다. 9. <생략> <p>② <u>제1항제1호 내지 제5호</u>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<생략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<u>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
<p>제38조 (운용 제한)</p>	<p>① <생략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<생략> 3. <u>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u>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 4. <u>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u>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 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를 초과하는 행위 	<p>① <생략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<생략> 3. <u>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u>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 4. <u>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u>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를 초과하는 행위 5. <u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매입</u>

	<p>5. ~ 6 <생략></p> <p>②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,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<u>제37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, 이 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</u>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<u>제37조제1항제7호</u>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<u>당시 기준지수 시가총액 대비 해당종목의 시가총액비중이 10%를 초과하는 종목인 경우에는 동 비중의 12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u></p> <p>6. <u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u></p> <p>7. ~ 8. <생략></p> <p>②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,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<u>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, 이 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</u>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<u>제37조제1항제8호</u>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<p>제40조 (투자신탁보수)</p>	<p>① <생략>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</p>	<p>① <생략>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</p>

	<p>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투자신탁의 해지</p> <p>③ <생략></p> <p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3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85</p> <p>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5</p>	<p>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다만, 직전 보수인출일인 2007년 11월 30일 이후 계상된 투자신탁보수는 부 칙 2(변 경) 시행일에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그리고 이후 보수계산기간은 부 칙 2(변 경) 시행일로부터 매3개월간으로 한다.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<u>투자신탁의 일부해지(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.)</u></p> <p>3. 투자신탁의 해지</p> <p>③ <생략></p> <p>1. <u>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[2.10]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[1.55]</u></p> <p>3. <u>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[0.20]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[0.15]</u></p>
<p>제40-1조 (성과보수 등)</p>	<p><신 설></p>	<p>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취득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성과보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.</p> <p>1. <u>성과보수 계산기간: 이 투자신탁의 부 칙2 (변 경) 시행일 이후 매 1년 단위로 계산한다.</u></p> <p>2. <u>성과보수: 매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까지의 수익률이 다목의 목표수익률을 초과하고, 펀드수익률이 5%를 초과한 경우에 라목의 성과보수금액을 지급한다.</u></p> <p>가. <u>초과수익률: 부 칙2 (변 경)</u></p>

		<p><u>시행일로부터 매 성과보수 계산기간 말일까지의 누적 운용수익률에서 목표수익률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p>나. <u>벤치마크수익률: 매 성과보수 계산기간 말일까지의 한국종합주가지수(KOSPI) 누적상승률 x 30% + KIS국고채1~2년지수 수익률 x 70%</u></p> <p>다. <u>목표수익률: 평가구간 벤치마크 수익률 + 0.5%</u></p> <p>라. <u>성과보수금액: 일별 순자산 총액을 평가구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한 후 일수로 나눈 금액(이하 “순자산평균”이라 한다) x 초과수익률의 5%. 다만, 다목 내지 라목의 경우 1년 미만은 5% x 경과일수/365</u></p> <p>③ <u>성과보수지급방법: 계산된 성과보수는 수익자의 승인후 투자신탁 재산에서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인출한다.</u></p> <p>가. <u>1년차: 당해년도 성과보수의 50%</u></p> <p>나. <u>2년차: MAX[0, (2년 누적성과보수) x 0.5 - 기지급 성과보수]</u></p> <p>다. <u>3년차: MAX[0, (3년 누적성과보수) - 기지급 성과보수]</u></p>
제43조 (이익분배)	<p>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<u>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한다.</u></p> <p>②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<u>현금</u>으로 분배한다.</p>	<p>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<u>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</u></p> <p>②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<u>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</u>으로 분배한다.</p>

<p>제49조 (신탁약관의 변경)</p>	<p>① <생략> ② <생략> 1. <생략> 2.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: <u>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</u> ③ <생략> ④ <u>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(이하 “이의신청기간”이라 한다)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u> ⑤ ~ ⑥ <생략></p>	<p>① <생략> ② <생략> 1. <생략> 2.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: <u>수익자 개별 공지</u> ③ <u>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(이하 “이의신청기간”이라 한다)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u> ④ <생략></p>
<p>제51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)</p>	<p>자산운용회사,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,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.</p>	<p>< 삭제 ></p>
<p>부 칙2(변경)</p>	<p><신설>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의 정한 사항은 2008년 2월 [26]일부터 시행·적용 한다.</p>